

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

※ **적서**로 작성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조치

※ **청서**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

구 분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4.(월) 00시 ~ 1. 17.(일) 24:00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~ 1. 31.(일) 24:00
① 모임·행사		
사적 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	▶ 좌동
기타 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 허용 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50인 기준 제외 	▶ 좌동
② 다중이용시설 : 종점·일반관리시설 등		
공통수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 * 일일 2회 이상 환기·소독 실시(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) 	▶ 좌동
유흥시설 5종	▶ 집합금지	▶ 좌동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집합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

구 분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4.(월) 00시 ~ 1. 17.(일) 24:00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~ 1. 31.(일) 24:00
노래연습장	▶ 집합금지	<p>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</p> <p>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p> <p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, 룸당 4명까지 허용,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 작성)</p> <p>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</p> <p>▶ 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</p> <p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p>
실내 스탠딩공연장	▶ 집합금지	<p>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p> <p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p> <p>▶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</p>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<p>▶ (식당)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*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업소 내 취식 금지(가족, 종사자 제외)</p> <p>▶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(시설 면적 50㎡ 이상)</p> <p>▶ 브런치카페·베이커리카페·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·배달만 허용 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을 판매하는 곳</p> <p>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p>	<p>▶ 식당·카페 모두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p> <p>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</p> <p>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</p> <p>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p>

구 분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4.(월) 00시 ~ 1. 17.(일) 24:00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~ 1. 31.(일) 24:00
출덕편	▶ 집합금지	▶ 좌동
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격렬한 GX류 시설*에 대하여 집합금지 * 줌바, 태보, 스피닝, 에어로빅, 스텝, 킥복싱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▶ 격렬한 집단운동(GX류) 프로그램은 금지 * 줌바, 태보 스피닝, 에어로빅 등 ▶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▶ 샤워실 운영 금지(수영종목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▶ 수용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▶ 장비대여, 탈의실 외 부대시설(식당·카페·오락실 등) 집합금지 ▶ 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▶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▶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▶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▶ 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▶ 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▶ 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▶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▶ 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▶ 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 ▶ 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야외스크린골프장 (밀폐형)	▶ 집합금지	▶ 삭제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관악기·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 * 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, 다만 '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▶ 노래·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(실) 內 1:1 교습만 허용하되,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(실) 內 4명까지 허용 ▶ 숙박시설 운영 금지 * 단,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

구 분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4.(월) 00시 ~ 1. 17.(일) 24:00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~ 1. 31.(일) 24:00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">운영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직업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동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동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동
목욕장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16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<li style="color: red;"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동
영화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동
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두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동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<li style="color: blue;">▶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 <li style="color: blue;">▶ 흡연구역 1인 사용 의무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동

구 분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4.(월) 00시 ~ 1. 17.(일) 24:00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~ 1. 31.(일) 24:0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	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	▶ 좌동
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	▶ 좌동
아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	▶ 좌동
백화점·대형마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▶ 집객행사 금지 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 	▶ 좌동
마트·상점·백화점 (300㎡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식 코너 운영 중단 	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편의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-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 -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	▶ 좌동
포장마차 (음식조리·판매시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(포장·배달만 허용) 	▶ 좌동

구 분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4.(월) 00시 ~ 1. 17.(일) 24:00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~ 1. 31.(일) 24:00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	
아파트 내 편의시설	▶ 운영 중단	▶ 삭제
주민센터	▶ 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	▶ 삭제
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	▶ 노래·관악기 교습 금지	▶ 노래·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(실) 內 1:1 교습만 허용하되,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(실) 內 4명까지 허용
숙박시설	▶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영업(예약) 제한 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	▶ 좌동
파티룸	▶ 집합금지	▶ 좌동
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(등록·미등록 불문)	▶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▶ 체험 시 영업(관리)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	▶ 좌동
국공립시설	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, 체육시설 운영 중단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	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중단 ▶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▶ 이용인원 30% 이하로 제한(최대 5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	▶ 좌동

구 분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4.(월) 00시 ~ 1. 17.(일) 24:00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~ 1. 31.(일) 24:00
기타시설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	▶ 좌동
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	▶ 좌동
교통시설 이용	▶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▶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, 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	▶ 좌동
스포츠 관람	▶ 무관중 경기	▶ 좌동
등교	▶ 밀집도 1/3 준수	▶ 좌동
종교활동	▶ 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원칙 *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·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(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·송출인력, 참여 신도 등)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1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각종 동호회 활동	▶ 탁구·배드민턴·축구·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·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▶ 댄스동호회,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	▶ 삭제
직장근무	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	▶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▶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

구 분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4.(월) 00시 ~ 1. 17.(일) 24:00	2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~ 1. 31.(일) 24:00
	<p>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▶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	<p>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▶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